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기준]

단위 : 만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지원금액

[지원금액 : 1회]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40	60	80	100

| 문의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로 신청 QR코드 |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소득자 (상시, 일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발행 2. (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p>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국세청 발행 4.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p>일용직 등</p>	<p>(별도서식) 소득감소확인서</p> <p>(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p>
<p>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 (’20. 2. 1. 이후 실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고용센터 발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QR코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최근('20. 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소득 보다 1유형(25% 이상), 2유형(이외) 감소한 경우

* 비교기간: '19년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2.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가구구성

'20. 9.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20. 9.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만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신청방법 및 결정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전화 본인인증)

'20. 10. 12.(월) ~ 11. 6.(금)



현장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20. 10. 19.(월) ~ 11. 6.(금)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40	60	80	100

*시군구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①가구소득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연소득 낮은 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